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 방안 마련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36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의견	2
IV. 주요 개별법에 대한 검토의견	6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정 부

나. 제 출 일: 2024. 6. 28.

다. 회 부 일: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영상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Ⅲ. 총괄의견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¹⁾에 따라 자치사무 처리, 재산 관리 및 자치규정 제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자치입법권 및 지방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법」²⁾에서 자치사무의 범위 및 조례 제·개정 근거 등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 및 계획수립권한 지방이양 등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연구기관 대상 수요조사와 관련 법령 780여 건의 전수조사를 거쳐 정비과제를 선정하였고, 제5차 중앙지방 협력회의³⁾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2023. 10. 27.)”을 마련하였음.

-
- 1)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 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자치권 강화 방안 선정 경과]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및 소속 연구기관 대상 수요조사
 - * 1차 : '22. 12. 9. ~ 12. 31. 2차 : '23. 1. 11. ~ 1. 31.
- 관련 법령 780여건 전수조사('23. 1월 ~ 5월)
- 법제처, 행안부,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정비과제 선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제약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유형을 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②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일률적이어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제약되는 경우, ③ 지자체 추진 정책 중 법령상 근거가 없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자체 추진 정책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협의 또는 지자체장의 중앙부처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경우로 분류하였고, 유형에 따라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정비기준을 제시하였음.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기준]

정비 유형	정비 기준
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②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일률적이어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제약되는 경우	조례로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
③ 지자체 추진 정책 중 법령상 근거가 없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근거 마련 후 조례로 위임
④ 지자체 추진 정책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협의 또는 지자체장의 중앙부처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경우	사후 통보 등으로 전환

자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안)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 중 정비 유형 ①과 ④에 해당되는 10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등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여 조례로 대폭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하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법률안 정비 주요내용]

연번	정비대상 법률	정비 주요내용
1	공연법	■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지자체장이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2	도서관법	■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장이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시·도무형유산 지정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 시·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사항 등을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4	문학진흥법	■ 문학관 운영 현황을 시·도지사가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정명령, 지자체 등이 소장하고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 등을 지자체장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을 지자체장이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용도·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상물 촬영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함. * '대통령령(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	지역문화진흥법	■ 문화지구 관리계획 작성 기준, 문화지구 내 금지·제한시설 등의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기부금품의 가액 및 품명을 지자체장이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10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출판문화산업 관련 등록·폐업 신고받은 사항, 직권말소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동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보고하도록 한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현행 대통령령 또는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여 조례에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방 사무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사전협의를 통보로 전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령상 기준 삭제 및 조례로의 위임 등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들이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의견 반영 등의 측면도 있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IV. 주요 개별법에 대한 검토의견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무형유산을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검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시·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 및 제33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 <u>제32조제4항</u> ----- ----- ----- -----.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4. -----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 12. (생략)

제32조(시·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신설>

제32조제4항-----

-----.

5. ~ 12. (현행과 같음)

제32조(시·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

-----.

<단서 삭제>

②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 무형유산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보고 사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⑧ 제1항·제2항 또는 제7항----- ----- ----- -----. 제33조(통보 사항) ----- ----- ----- ----- <u>통보</u> -----. 1. ~ 4.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시·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사전협의를 보고하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지방 사무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현행법 제32조의 사전협의 절차는 국가무형유산 명칭(판소리, 대목장 등)과 시·도무형유산 명칭이 중복되는 경우 무형유산 제도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시·도무형유산 명칭이 국가무형유산 명칭과 같은 경우 동일한 명칭 사용과 관련한 국가유산청의 의견을 시·도무형유산 지정 전에 수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및 협조 요청,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기 전에 따르도록 하던 대통령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② (생략)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해당 시·도의 조례로</u>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상물 촬영 지원 및 협조 요청, 영상위원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및 협조 요청,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본인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대통령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⁴⁾은 영상물 촬영 지원의 조건·내용 및 절차, 협조 요청 내용 및 절차, 영상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조건, 내용 및 절차
2. 협조 요청 내용 및 절차
3. 담당 부서

4. 그 밖에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등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상위원회의 기능과 사업 범위
3.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수 등 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규정하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단순 가이드라인 제시에 해당한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문화지구관리계획 작성 시 따르도록 정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시·도 및 대도시 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지구 내 금지·제한 시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전에 따르도록 하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생략)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 ----- <u>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u> ----- ----- ----- ----- -----.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u> ④ (생략)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② (생략)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 한다.</u> ⑤ (생략)	③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통보</u>-----.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지구 내 금지·제한 시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문화지구관리계획 작성 기준, 문화지구 내 금지·제한 시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기부금품 가액 및 품명의 보고를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본인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⁵⁾은 문화지구관리계획 작

5)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제19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3.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과 사업 범위 및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규정하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단순 가이드라
인 제시에 해당한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⁶⁾

문 의 처

02)6788-5384

6) 현행 문화지구관리계획 작성에 따르면 한 대통령령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